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2. 12. 7 선고 2022가단102694-1(분리)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

피 고 B

변 론 종 결 2022. 11. 23.

판 결 선 고 2022. 12. 7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159,208,816원 및 그중 106,846,795원에 대하여 2021. 8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.9%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 1) 2.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 이순형

1) 원고의 공동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2022. 12. 10. 판결을 선고하였다.